

[illegible]

* 감면대상 주택구분

1. 보유기간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
2.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, 다른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종전주택